

보도	2026.4.10.(금) 석간	배포	2026.4.9.(목)		
담당부서	금융감독원 회계감독국 감사제도운영팀	책임자	팀 장	최동협	(02-3145-7977)
		담당자	조사역	석현아	(02-3145-7763)
	중소기업중앙회 기업경영정책실	책임자	실 장	박화선	(02-2124-3145)
		담당자	과 장	김재령	(02-2124-3146)
	KOTRA 외국인투자옴부즈만실	책임자	실 장	정영수	(02-3497-1822)
		담당자	선 임	김민경	(02-3497-1692)

최초 외부감사 회사를 위한 감사인 선임제도 온라인 설명회 실시

-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 선임 필요 -

- 주요 내용 -

◆ 금융감독원은 **최초 외부감사 대상 회사**를 위한 **감사인 선임제도 온라인 설명회**를 실시합니다.

√ '26.4.10.(금) 유튜브 (금융감독원 공식채널), 금융감독원 (www.fss.or.kr), 중소기업중앙회 (www.kbiz.or.kr), KOTRA 외국인투자옴부즈만 (ombudsman.kotra.or.kr) 홈페이지에 동영상 등을 게시할 예정입니다.

◆ **최초 외부감사 대상 회사**가 **감사인 미선임으로 감사인 지정 등의 불이익**을 받지 않도록, **감사인 선정 주체, 절차**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입니다.

√ '26년 최초로 외부감사 대상이 된 12월말 결산 회사는 4월말까지 감사인을 선임하고, 계약체결 후 2주 이내에 증선위에 보고해야 하며, 위반 시 감사인 지정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√ 신규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정해진 기한 내에 감사 계약을 체결·보고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 대상 판단기준, 감사인 선정 주체, 선임 절차, 전자보고 요령 등을 알기 쉽게 안내할 예정입니다.

◆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온·오프라인 설명회 등을 통해 **기업들의 외부감사 법규위반을 예방**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.

1 개요

-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자산총액, 매출액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로서,
 - 최근 3년간 연평균 5천개 내외의 회사가 외감대상에 신규 편입

외부감사대상 회사추이

(단위:사)	'23년	'24년	'25년
외부감사대상*	41,212	42,118	42,891
신규 외감	6,821	4,807	4,747
외감 제외	3,128	3,901	3,974



* 외부감사대상 회사수는 매년 12월말 기준

- 최초로 외감대상이 되는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*하고, 계약체결 후 2주 이내에 동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,
 - * 예시 : '26년 최초로 외부 감사대상이 된 12월말 결산 회사는 '26.4월말까지 감사인을 선임
- 동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감사인 지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- 이에,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중앙회, 외국인투자음부즈만과 함께,
 - 신규 외감대상이 된 중소기업·유한회사가 기한 내에 감사 계약을 체결·보고할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감사인 선임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임

(참고) 외부감사대상 회사 판단기준

- ① 주권상장회사, 상장예정회사
- ② 비상장주식회사와 유한회사 (직전 사업연도말 아래 구분기준 중 하나에 해당)

구분	주식회사	유한회사
자산총액 또는 매출액*	500억원 이상	
복수 기준	<2가지 이상 해당> ① 자산 120억원 이상 ② 부채 70억원 이상 ③ 매출액* 100억원 이상 ④ 종업원수 100명 이상	<3가지 이상 해당> ① 자산 120억원 이상 ② 부채 70억원 이상 ③ 매출액* 100억원 이상 ④ 종업원수 100명 이상 ⑤ 사원수 50명 이상

* 12개월 미만시 12개월로 환산

2 설명회 주요 내용

□ **(감사인 선임제도)** 외부감사 대상회사 판단, 감사인 선정주체 및 선임절차*, 기타 외부감사법 주요 제도 등을 알기 쉽게 안내

* ① 외부감사인 선정기준 등 마련 → ② 외부감사인 선정 → ③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(감사계약 체결 후 2주 이내) → ④ 외부감사 사후평가

□ **(전자보고 요령)** 감사인 선임보고시 사용되는 금융감독원 외부감사 계약보고시스템* 이용방법과 절차를 상세히 설명(☞ 붙임 참조)

* 회사가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서류를 온라인(<http://eacrs.fss.or.kr>)으로 제출하고, 진행 과정을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

설명회 세부 내용

구분	주요 내용
감사인 선임 및 기타 주요제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외부감사 대상회사 및 판단기준 - 감사인 선임기한 및 계약기간 - 감사인 선정기준, 선정주체 - 감사인 선임보고, 사후평가 -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,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제출
감사인 선임 전자보고 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소개 - 고유번호 발급방법 - 감사인 선임보고서 제출방법

3 향후 계획

□ 유튜브*, 금융감독원(www.fss.or.kr) 「업무자료-회계」, 중소기업중앙회(www.kbiz.or.kr) 「정보마당-유관기관 공지」, KOTRA 외국인투자 ombudsman(ombudsman.kotra.or.kr) 「알림마당」에 동영상 등 게시

* 검색어 '금융감독원', www.youtube.com/fsskorea

○ 아울러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한 상담·문의*에도 신속히 답변

* 홈페이지 문의 :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<http://www.fss.or.kr>) ⇒ [업무자료] ⇒ [회계] ⇒ [회계질의] ⇒ "질의회신 및 Q&A신청" 클릭하여 Q&A 통해 질의

전화문의 : (02) 3145-7767/7763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

- ① DART 접수시스템(<https://filer.fss.or.kr>)에서 발급받은 고유번호 및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(<http://eacrs.fss.or.kr>) 로그인



* 고유번호 발급 등 관련 문의 : 국번없이 1332(이후 ⑤→①→①)

- ② 화면 상단의 '회사제출서류' 탭을 선택 후 화면 왼쪽에서 '감사인 선임보고서' 클릭



③ 회사의 상황에 맞게 개황 내용 작성

감사인 선임보고서

보고제도 문의 02. 3145. 7767
시스템 문의 02. 3145. 5463

1. 회사개황

1-1 회사명	운영서비스용	1-2 회사고유번호	00000000
1-3 법인등록번호	1111112222224	1-4 사업자등록번호(본점)	1168214464
1-5 법인구분 [?]	선택	1-5-1 금융회사에 해당 여부	선택
		1-5-2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해당 여부 [?]	선택
1-5에서 유한회사인 경우	1-5-3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 여부	선택	
	1-5-4 변경일자(1-5-3에서 '예'인 경우) [?]	YYYYMMDD	
1-6 감사위원회의 설치 여부 [?]	선택	1-6-1 감사위원회의 설치 대상여부 [?]	선택

- * **항목별 작성방법** :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<http://www.fss.or.kr>) → 업무자료(회계) → 외부감사 → 외부감사 업무자료·FAQ → 2026년 최초 외부감사 회사를 위한 감사인 선임제도 온라인 설명회 강의자료를 참고

④ 관련 문서 첨부 후 신고서 제출

2. 제출할 문서 첨부

공문 및 첨부서류 샘플 다운로드

2-1 감사인 선임보고 제출 공문		파일 선택
2-2 감사계약서 사본		파일 선택
2-3 해당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[?]		파일 선택
2-4 감사인 교체 사유		파일 선택
2-5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 내용		파일 선택
2-6 감사위원회 의사록		파일 선택
2-7 감사인 선임 위원회 또는 사원총회의 승인의사록		파일 선택
2-8 감사인 대리제출에 대한 위임장		파일 선택

- * **회사개황에 따라 첨부문서상의 활성화 여부가 달라지므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외의 첨부문서창이 활성화되는 경우 회사개황 정보를 다시 확인**

5 제출 후 '접수현황' 탭에서 회사의 문서제출이력 및 세부내용을 확인가능

금융감독원 |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

원격지원서비스 [→]

기본정보 회사·제출서류 감사인·제출서류 수시보고 접수 **접수현황** 공문 및 첨부서류 샘플 다운로드

(신) 제출현황 [2019.12.16. 이후]

(구) 제출현황 [2019.12.15. 이전]

지장현황조회(회사)

지장현황조회(감사인)

지장유예 결과조회

(신) 제출현황

보고구분 선택 접수일자 2025.04.02 - 2026.04.02 조회

처리상태 선택 초기화

총 26 건

접수번호	보고구분	첨부파일	접수일자	처리상태	비고	처리일자	확인증
20260402000003	감사인 선임보고서		2026.04.02 09:33:38	접수완료			조회

6 수정이 필요한 경우 '재제출'을 통해 업로드

2. 제출할 문서 첨부

2.1 감사인 선임보고 제출 공문	#-0jp3_- 복사본.jpg
2.2 감사계약서 사본	#-0jp3_.jpg
2.3 해당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	#-0jp3_- 복사본 (2).jpg
2.4 감사인 교체 사유	#-0jp3_- 복사본 (2) - 복사본.jpg
2.5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 내용	
2.6 감사위원회 의사록	
2.7 감사인신임위원회 또는 사원총회의 승인 의사록	
2.8 감사인 내리제출에 대한 위임장	

수정(재제출) 첨부파일 다운로드 인쇄 닫기

* **재제출 방법** : 접수현황 → 수정 대상 서류선택 → 수정(재제출) 클릭 → 내용 수정 및 문서 첨부하여 접수

※ 처리상태 관계없이 재제출 가능하며, 수정을 반복한 경우 마지막 접수서류 기준으로 처리